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0-61
--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0. 10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- 가. 자치법규 부패유발요인 사전 정비
- 나. 부패 연루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 명문화
- 다.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법률용어 순화 반영

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20조(해촉)에 금품향응수수, 불법로비,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위원의 결격(해촉)사유 명시
- 나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법률용어 변경에 따른 “가정”을 “가족”으로 변경
- 다. 법령 띄어쓰기 및 법률용어 순화 반영하여 조문상의 일부 표현 변경

## 3. 개정근거

- 가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영30조
- 나.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계획【부구청장방침(감사담당관-1015, 2010.2.9.)】
- 다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(정의)
- 라.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

## 4. 개정조례안 : 따로붙임

## 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## 6. 기타사항

- 가. 입법예고 : 2010. 8. 26. ~ 2010. 9. 14.(제출된 의견 없음)
- 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· 의결 (2010.9.30.)
- 다.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라. 신 · 구조문대비표 1부. 끝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동법시행령”을 “같은 법 시행령”으로,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 동(이하 “동”이라 한다)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 동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동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 동(이하 “동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4조 제목 중 “설치등”을 “설치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며, “구역내에”를 “구역 내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000동 자치회관(이하 “자치회관”이라 한다)로”를 “000동 자치회관(이하 “자치회관”이라 한다)으로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제3항 중 “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”를 “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”로 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제4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(이하“자치회관의 운영”이라 한다)”를 “(이하“자치회관 운영”이라 한다)”로 하고, 제3항 중 “주민자치위원회는제2항에”를 “주민자치위원회는 제2항에”로, “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”를 “제10조제6항에 의한”으로 하고, 제4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, “자치회관의 운영”을 “자치회관 운영”으로 하며, 제5항 및 제6항 중 “예산의 범위 안에서”를 “예산의 범위에서”로 하고, 제7항 중 “10인”을 “10명”으로 하고, 제8항 중 “자치회관과”를 “자치회관과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자치회관의 운영”을 “자치회관 운영”으로 하고, 제3항 중 “예산의 범위 안에서”를 “예산의 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10조 제목 중 “사용료등”을 “사용료 등”으로 하고, 제3항 중 “기준과 범위 안에서”를 “기준과 범위에서”로 하며, 제6항 중 “수강료 에”를 “수강료에”로 하고, “자치회관의 운영”을 “자치회관 운영”으로 한다.

제11조 제목 중 “이용등”을 “이용 등”으로 하고 제3항 중 “제10조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0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, 제2항 및 제3항 중 “자치회관의 운영”을 “자치회관 운영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예산의 범위 안에서”를 “예산의 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15조 중 “서울특별시마포구 ○○○동 주민자치위원회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○○○동 주민자치위원회”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인”을 “명”으로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제2항(본문 및 제1호) 및 제5항 중 “당해”를 각각 “해당”으로 하며, 제7항 중 “잔임기간”을 “남은 기간”으로 하고, 제10항 중 “예산의 범위 안에서”를 “예산의 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18조 제목 중 “직무등”을 “직무 등”으로 하고, 제1항 중 “통할”을 “총괄”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인”을 “명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1항 본문 중 “각 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“제4호 및 제5호”를 “제4호부터 제6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며, 제2호 중 “6월”을 “6개월”로 하고, 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여 같은 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 5. 금품향응수수, 불법로비,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경우

제21조제3항 중 “개의”를 “회의를 개최”로 한다.

제23조제1항 중 “예산의 범위 안에서”를 “예산의 범위에서”로 한다.

〈별표2〉 “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” 중

“국민기초생활보장법”을 “국민기초생활 보장법”으로 하고, “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”을 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”로 하고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“저소득의 모자 또는 부자 가정”을 “저소득의 모자 또는 부자 가족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 동(이하 “동”이라 한다)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같은 법 시행령</p> <p>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 동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“자치회관”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·복지·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.</li> <li>2. (생략)</li> </ol>	<p>제2조(정의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 동(이하 “동”이라 한다)</li> <li>2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
<p>제4조(설치 등) ① 자치회관은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<u>당해</u> 동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(학교, 공공시설, 연수시설 등)을 자치회관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.</p> <p>② 자치회관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000동 자치회관(이하 “자치회관”이라 한다)로 한다.</p>	<p>제4조(설치 등) ① 해당 구역 내에</p> <p>② 000동 자치회관(이하 “자치회관”이라 한다)으로</p>
<p>제5조(기능) ① (생략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6. (생략)</li> <li>② 제1항의 기능 중 <u>당해</u>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.</li> <li>③ <u>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</u>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.</li> </ol>	<p>제5조(기능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6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② 해당</li> <li>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</li> </ol>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시설 및 프로그램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자치회관의 시설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<u>당해</u>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등의 운영 실태를 <u>충분히</u> 파악하여 종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④ 구청장은 동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, 임차한 건물,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</p>	<p>제6조(시설 및 프로그램) 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..... ... <u>해당</u> ..... .....</p> <p>④ ..... ..... <u>그 밖의</u> ..... .....</p>
<p>제7조(운영) ①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(이하 “자치회관의 운영”이라 한다)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<u>주민자치위원회는 제2항에</u>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 시간 등을 감안하여 <u>제10조 제6항의 규정에</u> 의해 “수강료” 징수액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<u>당해</u> 동장,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<u>자치회관의 운영을</u>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및 시상금 등을 <u>예산의 범위 안에서</u> 적극적으로 지원하되,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“수강료”的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>⑥ 구청장은 자치회관별 프로그램 운영실적 등을 평가시상할 수 있으며,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<u>예산의 범위 안에서</u> 평생 교육,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, 지역문화 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7조(운영) ① ..... ..... <u>(이하 “자치회관 운영”이라 한다)은</u> ....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주민자치위원회는 제2항에</u> ..... ..... ..... <u>제10조제6항에</u> <u>의한</u> .....</p> <p>④ ..... ... <u>해당</u> ..... ... <u>자치회관 운영</u> ..... .....</p> <p>⑤ ..... ..... <u>예산의 범위에서</u> ..... .....</p> <p>⑥ ..... ..... <u>예산의 범위에서</u> ....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⑦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, 연구·개발, 협조·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, 관련분야 종사자, 시민·사회단체 관계자 등 <u>10인</u>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⑧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내 <u>자치회관과</u>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들과의 연계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.</p>	<p>⑦ ..... ..... ..... ..... ..... <u>10명</u> .....</p> <p>⑧ ..... <u>자치회관과</u> .. ..... .....</p>
<p>제8조(자원봉사자) ① 구청장과 동장은 <u>자치회관의 운영</u>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자원봉사자는 <u>자치회관의 운영</u>을 직접 담당하거나,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.</p> <p>③ 구청장은 <u>예산의 범위 안에서</u>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 및 선진지 견학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(자원봉사자) ① ..... <u>자치회</u> <u>관 운영</u>..... ..... .....</p> <p>② ..... <u>자치회관 운영</u> .. ..... .....</p> <p>③ ..... <u>예산의 범위에서</u> .. ..... .....</p>
<p>제10조(사용료 등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1로 정하는 <u>기준과 범위 안에서</u>,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,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정한다.</p> <p>④ ~ ⑤ (생략)</p> <p>⑥ 제2항에 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징수한 <u>수강료</u>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<u>자치회관의 운영</u>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, 그 수입·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이내에 공고·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</p> <p>⑦ (생략)</p>	<p>제10조(사용료 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..... ..... <u>기준과 범위에서</u>, ..... ..... .....</p> <p>④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..... ... <u>수강료에</u> ..... ..... <u>자치회관 운영</u>..... ..... .....</p> <p>⑦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이용등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주민은 <u>제10조 규정에 의한</u> 사용료등의 징수대상 시설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.</p> <p>④ ~ ⑤ (생략)</p>	<p>제11조(이용 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..... <u>제10조에 따른</u> 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④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2조(주민참여) ① 구청장과 동장은 <u>자치회관</u>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<u>자치회관의 운영</u>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</p> <p>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<u>자치회관의 운영</u>에 반영하여야 한다.</p>	<p>제12조(주민참여) ① ..... <u>자치회관 운영</u>.....</p> <p>.....</p> <p>② ..... <u>자치회관 운영</u>.....</p> <p>.....</p> <p>③ ..... ..... ..... <u>자치회관 운영</u>.....</p>
<p>제13조(수당)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<u>예산의 범위</u>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② 자원봉사자가 아니 강사에게는 <u>예산의 범위</u>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13조(수당) ① ..... <u>예산의 범위</u>에서 .....</p> <p>② ..... <u>예산의 범위</u>에서 .....</p>
<p>제15조(설치) 동의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각 동에 서울특별시마포구 000동 주민자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	<p>제15조(설치) .....</p> <p>.....</p> <p>서울특별시 마포구 000동 주민자치위원회 .....</p> <p>.....</p>
<p>제17조(구성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과 당연직 고문으로 구성되며,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(이하 “구의원”이라 한다)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(이하 “고문”이라 한다)이 되고, 비례대표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거주지 동에 한하여 고문이 된다.</p>	<p>제17조(구성등) ① .....</p> <p>..... 1명..... 25명.....</p> <p>..... 3명..... 해당 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② 동장은 <u>당해</u> 동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<u>자치회관의 운영</u>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.</p> <p>1. <u>당해</u>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, 복지시설, 통장 대표, 위원회 및 교육·언론·문화·예술, 기타 시민·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.</p> <p>2. (생략)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 <p>⑤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<u>당해</u> 동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실력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.</p> <p>⑥ (생략)</p> <p>⑦ 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,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유고시 새로 선출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<u>잔임기간</u>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⑧ ~ ⑨ (생략)</p> <p>⑩ 구청장은 자치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기교육과 박람회 및 선진지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.</p>	<p>② ..... <u>해당</u> 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 <u>자치회관 운영</u> .....</p> <p>.....</p> <p>1. <u>해당</u> 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..... <u>해당</u> 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 <u>남은 기간</u> 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⑧ ~ ⑨ (현행과 같음)</p> <p>⑩ .....</p> <p>... <u>예산의 범위에서</u> .....</p> <p>.....</p>
제18조(위원장의 직무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<u>통할</u> 한다.	제18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.....
② ~ ⑤ (생략)	..... <u>총괄</u> 한다.
제19조(간사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<u>1인</u> 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.	제19조(간사) ① .....
② (생략)	..... <u>1명</u> .....
	.....
	②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<p>제20조(해촉) ① 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당해</u> 동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</li> <li>2.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<u>6월</u>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.</li> <li>3. ~ 4. (생략)</li> </ol> <p>(신설)</p> <p>5.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20조(해촉) ① .....  ... 각 호의 어느 하나 .....  ..... 제4호부터 제6호 ....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해당</u> .....</li> <li>2. ..... <u>6개월</u> .....</li> <li>3. ~ 4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5. <u>금품향응수수, 불법로비,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경우</u></li> <li>6. <u>그 밖에</u> .....</li> </ol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1조(회의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<u>개의</u>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④ ~ ⑤ (생략)</p>	<p>제21조(회의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.....  ..... <u>회의를 개최</u> .....</p> <p>④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3조(실비보상 등) ①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23조(실비보상 등) ① .....</p> <p>..... <u>예산의 범위에서</u> ....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
<p>〈별표2〉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 (제10조제5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감면대상</th><th>감면비율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 (소년·소녀가장)</td><td>전액면제</td></tr> <tr> <td>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</td><td>전액면제</td></tr> <tr> <td>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경로우대자</td><td>전액면제</td></tr> <tr> <td>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</td><td>전액면제</td></tr> <tr> <td>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저소득의 모자 또는 부자 가정</td><td>전액면제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감면대상	감면비율	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 (소년·소녀가장)	전액면제	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	전액면제	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경로우대자	전액면제	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	전액면제	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저소득의 모자 또는 부자 가정	전액면제	<p>〈별표2〉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 (제10조제5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감면대상</th><th>감면비율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 (소년·소녀가장)</td><td>전액면제</td></tr> <tr> <td>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</td><td>전액면제</td></tr> <tr> <td>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경로우대자</td><td>전액면제</td></tr> <tr> <td>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</td><td>전액면제</td></tr> <tr> <td>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저소득의 모자 또는 부자 가족</td><td>전액면제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감면대상	감면비율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 (소년·소녀가장)	전액면제	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	전액면제	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경로우대자	전액면제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	전액면제	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저소득의 모자 또는 부자 가족	전액면제
감면대상	감면비율																								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 (소년·소녀가장)	전액면제																								
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	전액면제																								
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경로우대자	전액면제																								
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	전액면제																								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저소득의 모자 또는 부자 가정	전액면제																								
감면대상	감면비율																								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 (소년·소녀가장)	전액면제																								
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	전액면제																								
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경로우대자	전액면제																								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	전액면제																								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저소득의 모자 또는 부자 가족	전액면제																								